

2020년도 제1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6. 9.(화요일)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위정현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0건(제2020-41125호~제2020-41224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41125호~41224호{☆☆☆☆} 사이트의 '(방송)도로해도로(2020)' 등 170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41125호~제2020-41224호 170건의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방송)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사이트의 '(방송)도로해도로(2020)' 등 170건의 게시물은 웹하드를 통해 불법복제 영상(방송)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따라 시정권고"해야 한다고 판단됨. 단, 기 삭제 되었거나 전송을 중지한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D 위원: 본 심의 대상 제2020-41125호~제2020-41224호의 100개 안전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방송 저작물 170개를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영리를 위해 전송하는 게시물에 대한 것이다. 자료를 통해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적절함.

2020년 제100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9.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재화

위원 위정현

위원 홍지만